

2017.10.11

문의사항 김예솔관세사 T/ 02-6011-3021 메일/ yskim@esein.co.kr

'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' 개정 예고 안내

1. 개요

- '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' 개정 예고안을 다음과 같이 첨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주요사항

① 수출 정정업무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

현재	개정안
수출신고 후 정정신청 시 서류제출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는 세관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제출	수출정정 관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허용

② 해외 생산공장 지원을 위한 원상태 수출신고 간소화

현재	개정안
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원상태 수출은 통관단계에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수출신고 시 수출품의 수입신고내역 기재 * 많은 전자제품·자동차부품 업체가 국내외 생산공장에 수입원자재를 원상태 수출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건건이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어려움 호소	성실업체의 원상태 수출 신고 건에 대하여는 수출통관 단계에서의 수입신고내역 기재를 생략하여 신속통관 지원 * 수출고시 별표 '수출신고 작성요령' 개정 참고

2017.10.11

'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' 개정 예고 안내

2. 주요사항

③ 시행일자

- 2017.11.01

④ 의견 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17일까지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나애 사무관에 의견 제출
- 제출의견 보내실 곳
 - 전자우편: naaelee@customs.go.kr
 - 팩스: 042-481-7819

⑤ 예상효과

- 수출 정정업무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시행될 경우, 정정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

2017.10.11

'반송절차에 관한 고시' 개정 예고 안내

1. 개요

- '반송절차에 관한 고시' 개정 예고안을 다음과 같이 첨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주요사항

①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

현재	개정안
* '16년 반송신고서류 제출건수: 104,119건 1.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(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) 사본 2.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(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) 3.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·추천·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	종이서류제출대상인 반송신고에 대해 전면 전자제출을 허용

② 반송신고 취하 신청 시 제출서류 축소

현재	개정안
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물품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는 경우,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	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 생략- 멸실확인서와 멸각승인서는 UNI-PASS에서 조회 가능

2017.10.11

'반송절차에 관한 고시' 개정 예고 안내

2. 주요사항

③ 시행일자

- 2017.11.01

④ 의견 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10월 17일까지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나애 사무관에 의견 제출
- 제출의견 보내실 곳
 - 전자우편: naaelee@customs.go.kr
 - 팩스: 042-481-7819

⑤ 예상효과

-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시행 및 반송신고 취하신청 제출서류가 축소될 경우, 반송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

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 신규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6조(신고사항의 정정)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<u>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6조(신고사항의 정정)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<u>별표 8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(전자이미지 전송 포함)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수출신고 정정 신청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 신 설 ></p>	<p><u>제35조의5(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신고에 관한 특례)</u>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한 후 사용소비신고 등 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 개인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국외로 물품을 반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“수출신고서 작성 요령” (1)나항에 따라 국외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.</p>	<p>○ 국제배송 센터 전자상거래물류 허브지원</p>
<p>부 칙<관세청고시 제2017-14호 (2017. 4. 4.)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p>	<p><u>부 칙<관세청고시 제2017-00호 (2017.0.0.)>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	

현행	개정안	비고

[별표] 수출신고서 작성요령

(1) 일반사항

하. 제35조의2(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출신고)에 따라 수출하려는 물품은 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다음 항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 < 개정 >

- 「③제조자」 기재항목 중 「산업단지부호」 항목
- 「④구매자」 기재항목 중 「구매자부호」 항목
- 「⑨C/S구분」 기재항목
- 「⑪종류」 기재항목
- 「⑭적재항」 기재항목
- 「⑮선박회사(또는 항공사)」 기재항목
- 「⑯선박명(또는 항공편명)」 기재항목
- 「⑰출항예정일자」 기재항목
- 「⑱적재예정정보세구역」 기재항목
- 「⑲운송형태」 기재항목
- 「⑳검사회망일」 기재항목
- 「㉑물품소재지」 기재항목 중 「장치장부호」, 「반입번호」 항목
- 「㉒L/C번호」 기재항목
- 「㉓물품상태」 기재항목
- 「㉔사전입시개칭통보여부」 기재항목
- 「㉕반송 사유」 기재항목
- 「㉗품명」 기재항목
- 「㉙성분」 기재항목
- 「㉛송품장번호」 기재항목
- 「㉝수입신고번호」 기재항목
- 「㉞원산지」 기재항목 중 「결정기준」, 「표시여부」 항목
- 「㉟포장개수」 기재항목
- 「㊱수출요건확인(발급서류명)」 기재항목
- 「㊳운임」 기재항목
- 「㊵보험료」 기재항목
- 「㊷결제금액」 기재항목

- 「⑤⑩수입화물관리번호」 기재항목
- 「⑤⑪컨테이너번호」 기재항목
- 「⑤⑬운송(신고)인」 기재항목
- 「⑤⑭기간」 기재항목
- 비환급대상건의 경우 「③제조자」 기재항목 중 제조자 통관고유부호, 제조자 일련번호 항목, 「③①성분」 기재항목

나. 제35조의5(전자상거래 국외반출신고에 관한 특례)에 따라 국외반출하려는 물품은 국외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다음 항목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 < 신 설 >

- 「②대행자」 기재항목
- 「③제조자」 기재항목 중 「산업단지부호」 항목
- 「⑨C/S구분」 기재항목
- 「⑫결제방법」 기재항목
- 「⑭적재항」 기재항목
- 「⑮선박회사(또는 항공사)」 기재항목
- 「⑯선박명(또는 항공편명)」 기재항목
- 「⑰출항예정일자」 기재항목
- 「⑱적재예정정보세구역」 기재항목
- 「⑳검사회망일」 기재항목
- 「㉒L/C번호」 기재항목
- 「㉓물품상태」 기재항목
- 「㉔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」 기재항목
- 「㉕반송 사유」 기재항목
- 「㉖환급신청인」 기재항목
- 「㉗품명」 기재항목
- 「㉙상표명」 기재항목
- 「㉛성분」 기재항목
- 「㉞송품장번호」 기재항목
- 「㉟수입신고번호」 기재항목
- 「㊱수출요건확인(발급서류명)」 기재항목
- 「㊳운임」 기재항목

- 「㉘보험료」 기재항목
- 「㉙결제금액」 기재항목
- 「㉚수입화물관리번호」 기재항목
- 「㉛컨테이너번호」 기재항목

(5)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/EDI	작성요령	작성예
㉜수입 신고번호	AN..	15	C	공통	○ 수출신고 거래구분 '84', '86', '89', '72', '93' 등 재수출의 경우 수입신고 번호를 반드시 기재 ○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(화주)의 원상태 수출신고건(72)은 수입신고번호(분증번호 포함) 기재 생략 가능	-31010-04- 1490223
-란번호	N..	3	C	공통	- 해당 수입신고건의 란번호 기재	- 1

관한 고시」 개정 신규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5조(반송신고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<u>반송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자료 전송 시 종이서류제출대상(수출신고부호 M)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반송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<u>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(수출신고부호 M)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반송신고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</p>
<p>제9조(반송신고의 취하)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: <u>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9조(반송신고의 취하) ① 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: <u>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및 폐기 등록여부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반송신고 취하 시 멸실확인서 및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의무 폐지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5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5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○ 재검토기한 재설정</p>
<p>제16조(규제의 재검토) 관세청장은 「행정규제 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제5조 및 제9조에 대하여 <u>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(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 삭제 ></p>	<p>○ 일몰 조항 폐지</p>
<p>< 신설 ></p>	<p>부 칙<관세청고시 제2017-00호 (2017.0.0.)> <u>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	

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
[관세청공고 제2017-100호, 2017.9.27]

1. 행정규칙명

□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 고시 제2017-14호, '17.4.4)

2. 개정사유

□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방문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고

□ 전자상거래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 지원을 위해 간소한 신고절차를 마련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 정비

□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

3. 주요 개정내용

[1] 수출 정정업무 관련 증빙서류 전자제출 제도 시행

○(현행) 수출신고 후 정정신청시 서류제출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는 세관에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제출 하여야 함

○(개정) 수출정정 관련 첨부서류의 전자제출 허용

* 수출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('17.1.16 시행) 현황(6월말) : 120,584건(82.2%)

[2]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 정비

가. 국제물류센터 국외반출절차 간소화 지원

○(신설) 자유무역지역 내 전자상거래물품의 물류허브 조성 지원을 위하여 간소한 국외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신설

- 국외반출신고시 첨부서류의 전자제출을 허용하고 신고항목을 축소*하여 신속한 수출통관 지원

* 국외반출신고항목 축소(신고항목 : [現] 57개 → [改] 27개)

나.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신고항목 축소

○소액 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33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신고항목을 27개*로 추가 간소화

* 대상(案) : 적재항, 품명, 성분, 운임, 보험료, 결제금액(신고항목 : [現] 33개 → [改] 27개)

[3] 해외생산공장 지원을 위한 원상태 수출신고 간소화

○ (현행) 부정환급 방지를 위해 원상태 수출은 통관단계에서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수출신고 시 수출품의 수입신고내역 기재

* 많은 전자제품·자동차부품 업체가 국내외 생산공장에 수입원자재를 원상태 수출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건건이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어려움 해소

○ (개정) 성실업체의 원상태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출통관 단계에서의 수입신고내역 기재를 생략하여 신속통관 지원

* 수출고시 별표 '수출신고 작성요령' 개정

4. 신구조문대비표 : "붙임"

5. 시행일자(예정) : '17.11.1

6. 의견제출 방법

○ 제 출 처 : 관세청 통관기획과

○ 담 당 자 : 이나애 사무관(042-481-7802)

○ 제출기한 : 2017. 10. 17.

○ 제출방법 : E-mail(naaelee@customs.go.kr), FAX(042-481-7819)

「반송절차에 관한 고시」개정 입안계획서
[관세청공고 제2017-101호, 2017.9.27]

1. 행정규칙명

□ 「반송절차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 고시 제2015-61호, '15.11.30)

2. 개정사유

□ 반송신고시 방문 제출하고 있는 첨부서류를 전자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기업 비용 절감 및 민원인 편의 제고

□ 반송신고 취하신청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 부담 경감

□ 규제 재검토(2년 주기) 일몰 조항 폐지

3. 주요 개정내용

[1]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 (제5조 제2항)

○ 종이서류제출대상인 반송신고에 대해 전면 전자제출을 허용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종이서류 없는 통관행정 구현

* '16년 반송신고서류 제출건수: 104,119건

1.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(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) 사본

2.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(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)

3.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·추천·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

[2]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 (제9조 제1항 제2호)

○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물품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 생략

- 멸실확인서와 멸각승인서는 UNI-PASS에서 조회 가능

*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: 화물 >> 국고귀속 및 폐기관리 >> 폐기관리

[3] 규제재검토(2년 주기) 일몰 조항 폐지 (제16조)

○제5조(반송신고) 및 제9조(반송신고 취하)의 법적근거*가 명확하다는 규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규제재검토 조항 폐지

* 관세법 제241조(수출·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) 및 제250조(신고의 취하 및 각하)

4. 신규조문대비표 : "붙임"

5. 시행일자(예정) : '17.11월

6. 의견제출 방법

○ 제 출 처 : 관세청 통관기획과

○ 담 당 자 : 이나애 사무관(042-481-7802)

○ 제출기한 : 2017. 10. 17. 화

○ 제출방법 : E-mail(naaelee@customs.go.kr), FAX(042-481-7819)